



교육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20.자) 안내

1. 관련

- 가.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적용사항 안내 (2023.1.27.,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854)
- 나.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8판 안내(2023.2.21.,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2072)
- 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 2023.3.16. 접수)

2.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를 우리부에 알려왔습니다. ※ [붙임] 참조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23.1.30.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나. 시행 : 2023. 3. 20.(월) 0시부터

3. 이와 관련, 각 대학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3.20.(월)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8판, 2023.2.21.)」는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추후 개정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4174(2023.3.15.) 공문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1부.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FAQ 1부. 끝.

교육부장관



각종대학, 공립대학교, 국립교육대학교, 국립대학교, 국립대학법인, 기능대학, 기술대학, 대학원대학교, 사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전공대학

주무관

이근우

행정사무관

김동석

대학운영지원
과장

전결 2023.3.17.

김홍순

협조자

시행 대학운영지원과-3883 ((2023.3.17.)) 접수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4-2동 431-2호 / <https://www.moe.go.kr>

전화 044-203-6932 전송 044-203-6991 / ignuignu@korea.kr / 공개